

건설정책리뷰 2021-06

202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이 종 광

2021. 11

요 약

- 본 조사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중요하다고 파악한 하도급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의 정책 체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8개 범주로 구분하여 총 39개 항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여(〈표 1-1〉 및 〈표 1-2〉 참고), 하도급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7,870개 중 계통추출법에 의하여 5,0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87개(표본의 9.7%에 해당)의 유효 응답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해당항목에 대한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업체는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공정거래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2.5점으로 조사되었음(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본문 〈표 3-1〉 참고). 지난해 체감도 평균 점수 73.2점보다 0.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은 공정거래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2020년도 체감도 평균점수 73.2점보다 소폭 하락하였음. 다만 2019년도 체감도 평균점수 70.2점과 2018년 체감도 평균점수 68.3점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 추후 조사를 통한 체감도 점수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여 불공정거래 개선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8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66.1점으로 가장 낮고, 점수가 높아지는 순으로 부당특약이 67.6점, 하도급대금 지급 69.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1.5점, 보복조치의 금지 76.5점, 부당감액 77.9점, 부당한 위탁취소 78.4점, 부당반품 81.0점의 순서로 조사되었음(본문 〈표 3-3〉 참고).

-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불공정거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하도급대금 조정이나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66.1점), 부당특약(67.6점), 하도급대금 지급(69.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1.5점) 등 4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복조치의 금지(76.5점), 부당감액(77.9점), 부당한 위탁취소(78.4점), 부당반품(81.0점) 등 4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체감도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항목과 체감도 점수가 낮은 하위 5개 항목을 선별하여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작동실태가 양호한 항목과 그러하지 아니한 항목을 구분함.
- Top 5 항목은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개, 부당한 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개로 나타났음(〈표 3-15〉 참고).
 - Bottom 5 항목은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개, 하도급대금 조정에 속하는 항목이 1개로 나타났음(〈표 3-16〉 참고). 부당특약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음. 부당특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에 관한 불공정행위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 원도급 업체의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대금결정, 대금지급, 대금조정)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Bottom 5분석에서는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부당특약 중에서도 특히 아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재작업 · 추가작업 · 보수작업 비용 부담을 지우는 약정.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이

점은 범주별 체감도 점수 비교에서(〈표 3-3〉 참고)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간접비를 일정범위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서는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

■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조정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부당특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외에 복잡하고 방대한 계약문서 속에 삽입되어 있어 외부의 적발이 어려우며, 하도급계약이 원·하도급업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이므로 사전적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도개선 외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행정당국이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안전, 품질, 근로자 임금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요 약	i
I. 서론	1
1. 조사배경 및 목적	1
2. 조사개요	3
II. 조사대상 관련 하도급제도의 주요내용	6
III.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14
1. 체감도 평균 점수	14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16
3. 구간분석	25
4. Top 5 및 Bottom 5 분석	27
IV. 종합	30
참고문헌	36
부록	37

I.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체들의 2020년 기준 전체 계약금액(94조 4천억 원) 중 하도급 계약금액(62조 7천억 원)이 66.4%를 차지하여 원도급 계약금액(31조 6천억 원)과 비교할 때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높음(전문건설협회 2020 기준 전문건설업 통계분석 자료 참고).
 - 건설공사는 다양한 생산요소, 기술, 인력의 결합을 통한 복합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짐. 건설업체는 수주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체로 일괄생산에 따른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생산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생산방식과 생산요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전체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어 시행하는 하도급생산이 일반적인 방식임.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를 ‘원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원도급업체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번 정부는 그 동안 공정경제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기조의 3대 축으로 하고, 중소기업 전담부처(중소벤처기업부, 2017.7.26. 신설)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는 개별 기업의 수익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생태계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의 정착은 공정경제 측면 뿐 아니라 이 번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인 중소 건설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힘의 격차임. 하도급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현장 일용근로자는 하도급업체가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기업 간 관계뿐 아니라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함.
- 하도급업체는 일한 만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일용근로자들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자 가계도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조사는 건설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8개 범주 39개 항목에 걸쳐 건설하도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개요

○ 조사기업

- 전문건설업체 중 2020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17,870개사(2021년 5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었음.
-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응답지 487부¹⁾(표본 5000개의 9.7%에 해당함)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체감도 조사대상 설문

- 8개 범주(〈표 1-1〉 참고)에 속하는 39개 항목(〈표 1-2〉 참고)을 조사대상으로 함
 - 설문지는 부록 참고
 - ‘보복조치 금지’ 범주는 2018년 조사부터 시행.
- 2020년 1년 간 발생한 건설하도급거래를 조사함.

〈표 1-1〉 대상행위 범주 및 항목

분 야	범 주	항 목
부당특약	부당특약	10
3배 손해배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
	부당한 위탁취소	2
	부당감액	7
	부당반품	4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	4
	하도급대금 조정	3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 금지	1

1) 회수된 설문지 487부는 지역별로 서울 84부, 부산 33부, 대구 20부, 인천 22부, 광주 22부, 대전 20부, 울산 15부, 경기 91부, 강원 17부, 충북 27부, 충남 31부, 전북 15부, 전남 11부, 경북 27부, 경남 40부, 제주 12부 등으로 취합되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 전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수화 하는데 있어서는 업종별 기준 등 다른 변수를 구분할 의미는 없다고 보아 별도의 변수로 삼지 않았다. 또한 통계가 수집되는 23개의 전문건설업종과 다른 변수를 묶을 경우 요구되는 표본의 개수가 크게 늘어나 조사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측면도 고려하였다.

- 조사대상 39개 항목의 상세내용은 <표 1-2>와 같음.

<표 1-2> 조사대상 항목 상세 내용

범주	항 목
1. 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4. 부당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5. 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6. 하도급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 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조사 및 분석방법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응답자가 선택하게 함.
- 체감정도 단계별로 <표 1-3>과 같이 불공정거래가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 불공정거래가 '매우 많다'의 경우 0점을 배점함.

〈표 1-3〉 단계별 배점

단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배점	100	75	50	25	0

- <표 1-4>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별 응답을 대응하는 점수로 전환하여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가중 평균한 값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

〈표 1-4〉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산정 방식

$$\left(\begin{array}{c} \text{전혀} \\ \text{없다} \\ \text{응답수} \end{array} \times 100 + \begin{array}{c} \text{별로} \\ \text{없다} \\ \text{응답수} \end{array} \times 75 + \begin{array}{c} \text{보통} \\ \text{응답수} \end{array} \times 50 + \begin{array}{c} \text{다소} \\ \text{있다} \\ \text{응답수} \end{array} \times 25 + \begin{array}{c} \text{매우} \\ \text{많다} \\ \text{응답수} \end{array} \times 0 \right) / \begin{array}{c} \text{전체} \\ \text{응답수} \end{array} =$$

II. 조사대상 관련 하도급제도의 주요내용

- 건설하도급에서 중요한 거래 유형과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으로 함. 조사대상은 2016년 최초 조사 당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수차례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음.
 -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기술자료 제공금지 사항은 건설하도급과 관련이 많지 않아 제외하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일반조항 외에 하도급업체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 즉 부당특약을 강제하는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원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일반적으로 증액)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조정하지 않는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하도급업체의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클레임이 증가하면서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8년 조사에서 보복조치 금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 (2018. 1. 17 개정)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3배 손해배상 적용
 - 당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를 기술유용(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2011. 6. 30. 시행)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2013. 11. 29. 시행). 이후 보복조치를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음(2018. 7. 17. 시행).
 -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네 가지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와 별개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항,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제1항·제2항,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제3항 및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부당특약

- 당사자 간 합의를 명분으로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재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특약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당사자 간 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웠던 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4년 2월 14일자로 시행(하도급법 제3조의4,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도급업체에게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함께 도입하였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하도급업체(수급인)는 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이행하고 원도급업체(도급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함. 하도급업체에게 있어서 공사수행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능성, 지급되리라는 예측은 하도급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대한 의무 위반이 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일반화된다면 시장거래의 계속성이 위협받고 신뢰체계가 붕괴될 위험을 초래함.
-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급여와 소득수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됨. 특히 건설업의 특성 상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과 조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음(하도급법 제13조 및 제16조).
-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종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개정 하도급법(2018. 1. 16.)에서는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건비나 경비 등 원재료 이외 항목의 가격변동으로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확대하였음(2017. 7. 17.부터 시행).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제 도입 등 정책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원가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 있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018.1.17. 개정, 2018.7.17. 시행)

○ 보복금지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음. 종전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분쟁 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있었음. 2018년 1월 17일자 개정 법률에서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도 위법행위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음(2018.7.17. 시행).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함.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2018.1.17. 개정, 2018.7.17. 시행)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Ⅲ.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1. 체감도 평균점수

-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5점으로 조사되었음.
 - 2020년 조사 체감도 점수에 비해 0.7점 하락하였음.
 - 2017년 조사 체감도 점수 67.9점에 비해 4.6점 높으며, 2018년 조사 체감도 점수에 비해 4.2점 높으며, 2019년 조사 체감도 점수 70.2점에 비해 2.3점 높음.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감액, 부당반품, 하도급 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7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음.

<표 3-1> 연도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체감도 점수	70.1	67.9	68.3	70.2	73.2	72.5
증감		-2.2	0.4	1.9	3.0	-0.7

- 39개 항목별 체감도 점수는 <표 3-2>와 같음.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체감도 점수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이며,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여 절대적 기준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함.

〈표 3-2〉 2021년 항목별 체감도 점수 및 연도별 비교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2021	증감	2020	증감	2019	증감	2018	증감	2017
1.부당 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7	↑	61.0	-	61.0	↑	60.1	↓	60.6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8.4	↑	66.1	↑	59.7	↑	57.5	↑	55.3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0	↓	67.7	↑	60.6	↑	59.59	↓	59.60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1.2	↓	71.6	↑	67.1	↑	64.5	↑	63.7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8.0	↓	70.9	↑	65.8	↑	63.2	↑	63.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9	↓	65.2	↑	57.5	↑	55.7	↓	56.5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1.3	↓	71.8	↑	68.3	↑	65.4	↑	65.3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8.4	↓	73.2	↑	66.3	↑	63.6	↓	65.4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65.8	↓	67.3	↑	62.1	↑	59.9	↓	62.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4.6	↓	67.1	↑	60.5	↑	58.0	↓	60.7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8.2	↓	71.1	↑	66.3	↑	63.0	↓	64.9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0.2	↓	70.4	↑	66.7	↑	65.2	↓	65.9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2	↓	76.8	↑	73.2	↑	71.8	↓	72.2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5.4	↑	73.6	↑	69.4	↑	68.7	↑	67.7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5.9	↓	66.5	↑	63.0	↑	62.2	↑	60.6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7	↑	72.5	↑	69.2	↑	68.3	↑	65.3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2	↑	70.0	↑	67.3	↑	66.3	↑	65.7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5.1	↑	74.3	↑	70.6	↑	70.5	↑	68.0
3.부당한 위탁 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8.2	↓	79.9	↓	81.0	↑	80.2	↑	79.0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8.7	↓	80.2	↓	80.3	↑	77.4	↑	77.1
4.부당 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5	↓	75.7	↑	73.7	↑	72.1	↑	70.8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5.6	↓	76.1	↑	75.5	↑	72.9	↑	72.6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80.0	↓	80.3	↓	80.6	↑	78.3	↑	75.2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8.1	↑	77.5	↑	77.2	↑	75.3	↑	75.2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8.8	↓	79.4	↑	78.4	↑	75.5	↑	75.1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8	↓	80.9	↑	80.1	↑	79.7	↑	76.3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4	↓	79.8	↑	78.8	↑	78.7	↑	75.2
5.부당 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1.0	↓	83.4	↓	83.6	↑	82.1	↑	79.9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1	↓	81.7	↓	83.2	↑	80.6	↑	79.2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1.4	↓	82.7	↓	83.6	↑	80.5	↑	78.6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1.6	↓	82.1	↑	81.6	↑	79.3	↑	76.9
6.하도급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3.2	↑	71.8	↑	67.7	↓	69.2	↓	70.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6.3	↑	65.8	↑	61.5	↓	62.9	↑	61.5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1	↓	64.2	↑	60.1	↑	58.7	↓	60.5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3.7	↓	74.3	↑	70.6	↑	69.8	↑	68.9
7.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6.4	↓	68.3	↑	64.0	↑	58.7	↓	61.6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6.0	↓	69.0	↑	64.1	↑	58.8	↓	62.4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5.9	↓	67.8	↑	61.4	↑	57.6	↓	60.5
8.보복 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6.5	↓	76.6	↑	75.0	↑	73.2		

- 부당반품 금지 범주 ④번 항목(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을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은 81.6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는데,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이 항목에서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부당특약 금지 범주 ⑥번 항목(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은 63.9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이 항목의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 8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표 3-3>과 같음.

<표 3-3> 2021년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범주	1. 부당 특약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4. 부당감액	5. 부당반품	6. 하도급 대금 지급	7. 하도급 대금 조정	8. 보복 조치 금지
2021	⑦67.6	⑤71.5	②78.4	③77.9	①81.0	⑥69.3	⑧66.1	④76.5
2020	⑧68.2	⑤71.9	②80.1	③78.5	①82.5	⑥69.0	⑦68.4	④76.6
2019	⑧62.9	⑤68.2	②80.7	③77.7	①83.0	⑥65.0	⑦63.2	④75.0
2018	⑦60.8	⑤67.0	②78.8	③76.1	①80.6	⑥65.1	⑧58.4	④73.2
2017	⑦61.2	④66.3	②78.0	③74.4	①78.6	⑤65.3	⑥61.5	-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부당반품(1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81.0점으로 가장 높음(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와 같은 순위). 다음으로 부당한 위탁취소(3 범주) 78.4점, 부당감액(4 범주) 77.9점, 보복조치 금지(8 범주) 76.5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2 범주) 71.5점, 하도급대금 지급(6 범주) 69.3점이며, 부당특약(1 범주) 67.6점, 하도급 대금 조정(7 범주) 66.1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음.
 - 1순위: 부당반품(81.0점)
 - 2순위: 부당한 위탁취소(78.4점)
 - 3순위: 부당감액(77.9점)
 - 4순위: 보복조치 금지(76.5점)

- 5순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1.5점)
 - 6순위: 하도급대금 지급(69.3점)
 - 7순위: 부당특약(67.6점)
 - 8순위: 하도급대금 조정(66.1점)
- 1순위(부당반품)에 이어 2순위(부당한 위탁취소)와 3순위(부당감액)도 2020년 조사와 범주별 순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가 최하위로 나타났음. 체감도 점수는 66.1점으로 2020년의 68.4점에 비해 2.3점 하락하였음.
 - 하도급대금 지급의 체감도 점수는 2017년 65.3점, 2018년 65.1점, 2019년 65.0점으로 점수가 계속 하락하다가 2020년 69.0점, 2021년 69.3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6순위에 해당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을 기준으로 부당반품(81.0점), 부당한 위탁취소(78.4점), 부당감액(77.9점), 보복조치 금지(76.5점) 등 4가지 범주는 72.5점 이상에 해당함. 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1.5점), 하도급대금 지급(69.3점), 부당특약(67.6점), 하도급대금 조정(66.1점) 등 4가지 범주는 전체 체감도 점수 72.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대금 결정, 지급 및 조정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계약조건과 관련한 부당특약 설정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3-4>와 같음.
- 부당특약 금지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7.6점으로 나타남.
 -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 보다 낮음.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7순위에 해당함.
 -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71.3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63.9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순위에 변동은 있으나 최상위 3개 항목은 2020년과 동일함.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0개 항목이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2.5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특약 관련 항목에서 불공정거래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표 3-4〉 부당특약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1.3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1.2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8.4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8.4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8.0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7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0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5.8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4.6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9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3-5〉와 같음.

〈표 3-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5.4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5.1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2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7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2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0.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8.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5.9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1.5점으로 나타남.
 -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 보다 낮음.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5순위에 해당함.
 - 범주 체감도 점수가 2020년 대비 소폭 하락함(2020년 71.9점).

 -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75.4점)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65.9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최저점 항목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와 동일).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2.5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개, 72.5점 미만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개로 나타났음. 특히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65.9점)의 항목은 2020년 조사에서도 가장 하위에 해당하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도 낮은 체감도 점수를 나타내어 이 항목과 관련되는 불공정거래 발생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표 3-6>과 같음.

〈표 3-6〉 부당한 위탁취소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8.7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8.2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나타남.
 -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높음.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2순위에 해당함.
 - 2020년에 비해 체감도 점수는 하락함(2020년 80.1)

- 체감도 점수는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78.7점),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항목(78.2점)의 순위며, 두 항목 모두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범주보다 상대적으로 체감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건설공사에서 목적물 수령거부나 인수거부, 계약취소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3-7>과 같음.

<표 3-7> 부당감액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80.0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8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4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8.8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8.1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5.6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5

- 부당감액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7.9점으로 나타남.
 -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높음.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3순위에 해당함.
 - 체감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이나, 2020년 대비하여 소폭 하락함(2020년 78.5점).
-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항목(80.0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항목(73.5점)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7개 항목 모두의 체감도 점수가 전체 체감도 점수 72.5점을 상회하고 있음.
 -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3-8>과 같음.

〈표 3-8〉 부당반품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1.6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1.4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1.0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1

- 부당반품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81.0점.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2020년 조사에서도 1위).
 -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 보다 높음.
 - 2021년 조사에서 범주별 체감도 점수가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주는 부당반품 범주뿐임.
 - 부당반품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4년 연속 80점 이상(2018년 80.6점, 2019년 83.0점, 2020년 82.5점).
 - 2020년 체감도 점수 82.5점 대비 소폭 하락함.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81.6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음.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80.1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부당반품에 속하는 4개 항목 모두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더 높은 80점대 초반 대로 나타나 부당반품과 관련된 하도급거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품질문제를 하자보수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반품 또는 인수거부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3-9>와 같음.

〈표 3-9〉 하도급대금지급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3.7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3.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6.3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1

- 하도급대금지급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9.3점으로 나타남.
 -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낮음.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6순위에 해당함.
 -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항목(73.7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으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항목(64.1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보다는, 법정 기일(15일) 또는 계약문서 상의 하도급대금 약정기일을 잘 지키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중소 건설업체 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 가계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기변화 추이를 보아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3-10〉과 같음.

〈표 3-10〉 하도급대금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6.4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6.0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5.9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6.1점으로 나타남.
 -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낮음.
 - 체감도 점수가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최하위에 해당함.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항목(66.4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 통지하지 않음 항목(65.9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에 속하는 3개 항목 모두 전체 체감도 점수 72.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사이에 조정된 사유와 내용을 법정기일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조정된 계약금액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 조정기한 내에 조정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건설공사는 당초 예정된 계획과 달리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물가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함. 원도급계약 변화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원도급 업체가 의도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음.

○ 보복조치 금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표 3-11>과 같음.

<표 3-11> 보복조치 금지 항목 체감도 점수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6.5

- 보복조치 금지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76.5점으로 나타났음.
 - 조사항목은 1개 항목임.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포괄함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72.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양호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는 대체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므로 적발되는 경우는 실제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표 3-12>는 조사대상 8개 범주별로 각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한 <표 3-4> 내지 <표 3-11>을 통합하여 비교하기 쉽게 나타낸 것임.

<표 3-12> 범주별 항목의 체감도 점수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부당특약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1.3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1.2
	⑧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8.4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설	68.4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8.0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7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0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5.8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4.6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9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5.4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5.1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2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7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2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0.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8.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5.9	
3. 부당한 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8.7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8.2
4. 부당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80.0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8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4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8.8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8.1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5.6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5
5. 부당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1.6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1.4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1.0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1
6. 하도급대금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3.7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3.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6.3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1
7. 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6.4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66.0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5.9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6.5

3. 구간분석

○ <표 3-13>은 조사대상 8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를 5점 구간으로 나누어 분포현황을 표시한 것임. 구간별 분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조사대상 8개 범주별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3-13> 체감도 점수 구간별 분포

범주	항목	점수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1.부당특약	①	67.7							
	②	68.4							
	③	67.0							
	④	71.2							
	⑤	68.0							
	⑥	63.9							
	⑦	71.3							
	⑧	68.4							
	⑨	65.8							
	⑩	64.6							
2.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①	68.2							
	②	70.2							
	③	73.2							
	④	75.4							
	⑤	65.9							
	⑥	72.7							
	⑦	71.2							
	⑧	75.1							
3.부당한 위탁 취소	①	78.2							
	②	78.7							
4.부당감액	①	73.5							
	②	75.6							
	③	80.0							
	④	78.1							
	⑤	78.8							
	⑥	79.8							
	⑦	79.4							
5.부당반품	①	81.0							
	②	80.1							
	③	81.4							
	④	81.6							
6.하도급대금 지급	①	73.2							
	②	66.3							
	③	64.1							
	④	73.7							
7.하도급대금 조정	①	66.4							
	②	66.0							
	③	65.9							
8.보복조치 금지	①	76.5							

-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조치 금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주로 71점 이상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부당반품 범주의 항목은 모두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70점 이하 점수대에 분포하는 항목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은 2020년에는 이어 2021년에도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 2019년에는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이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4개, 하도급대금 지급에 속하는 항목 1개로 총 5개였음.
 - 61점 이상에서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은 16개(41.0%)인데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8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하도급대금지급이 2개, 하도급대금 조정은 3개로 나타났음.
 -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항목의 41%가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
 - 부당특약(8개),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 3개, 하도급대금 지급 2개, 하도급대금 조정 3개) 불공정거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당특약 관련 항목 10개 중 8개가 해당하고 있음. 하도급대금 관련 항목 중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항목 4개 중 3개가 이 구간에 해당하고 있어 하도급대금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71점 이상에서 8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은 20개(51.3%)인데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5개, 부당한 위탁취소가 2개, 부당감액이 7개, 부당반품 1개, 하도급대금 지급이 2개, 보복조치 금지가 1개로 나타났음.
 - 81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3개(7.7%)인데,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로 나타났음.

3. Top 5 및 Bottom 5 분석

○ <표 3-14>는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전체 항목을 체감도 점수 순으로 배열한 결과로서, 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순위를 파악할 수 있음.

<표 3-14> 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순위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1.6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1.4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1.0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1
4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80.0
4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8
4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9.4
4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8.8
3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8.7
3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8.2
4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8.1
8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6.5
4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5.6
2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5.4
2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5.1
6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3.7
4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5
2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2
6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3.2
2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7
1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1.3
2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2
1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1.2
2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0.2
1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8.4
1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8.4
2	①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8.2
1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8.0
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67.7
1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67.0
7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6.4
6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6.3
7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66.0
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5.9
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5.9
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5.8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4.6
6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1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9

-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부당 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음.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항목,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5개 항목을 선정하였음.

○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Top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3-15>와 같음.

<표 3-15>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1.6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1.4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1.0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1
4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80.0

※ 범주 4는 부당감액, 범주 5는 부당한 반품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1위 항목은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81.6점)으로 나타남.
 - 상위 2위 항목은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81.4점)
 - 상위 3위는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1.0점)
 - 상위 4위는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80.1점)
 - 상위 5위는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80.0점)
- 부당반품 범주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대체로 양호함.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1위(5-④), 2위(5-③), 3위(5-①), 4위(5-②)에 해당하며,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5위(4-③)에 해당함.
 - 상위 1위(5-①), 2위(5-③), 3위(5-②), 4위(5-②) 항목은 2020년 조사에서도 Top5에 포함.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대체로 높은 것은 건설공사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하자보수 등을 치유하는 경우가 많고,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Bottom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3-16>과 같음.

<표 3-16>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9
6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1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4.6
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5.8
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5.9

※ 범주 1은 부당특약, 범주 6은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 7은 하도급대금 조정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1위 항목은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63.9점)으로 나타남.
 - 하위 2위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64.1점)
 - 하위 3위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64.6점)
 - 하위 4위는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65.8점)
 - 하위 5위는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65.9점)
- 부당특약 범주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낮아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수준임.
 -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1위(1-⑥), 3위(1-⑩), 4위(1-⑨)는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임.
 - 하도급대금 관련 항목도 최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음. 2위(6-③)는 '하도급대금 지급', 5위(7-③)는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임.
 - 하위 1위, 2위 항목은 2020년 조사에서도 Bottom 5 포함되었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다수로서 중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부당특약의 대부분은 결국 공사대금과 관련된 항목에 해당함. 최하위권 5개 항목에 부당특약 외에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6-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과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7-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이 포함된 것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부당특약과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IV. 종합

- 본 조사는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7,870개 중 계통추출법에 의하여 5,000개 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하였으며,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응답지 487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설문은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조사 항목은 <표 1-2>, 설문지는 부록 참고).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2.5점으로 조사되었음.
 - 체감도 조사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기준에서 공정거래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임.
 - 2021년 조사에서는 2020년에 비해 0.7점 하락하였으나, 전반적 추세로 보면 2020년 체감도 점수(73.2점)가 2019년 체감도 평균점수 70.2점보다 3.0점 상승하였고,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체감도 평균점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추세적으로 건설하도급 불공정 공정거래가 개선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표 3-1> 참고).
- 범주별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66.1점)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으며, 부당특약(67.6점), 하도급대금 지급(69.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1.5점) 등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조사대상 8개 범주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정렬하면 하도급대금 조정(66.1점), 부당특약(67.6점), 하도급대금 지급(69.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1.5점), 보복 조치 금지(76.5점), 부당감액(77.9점), 부당한 위탁취소(78.4점), 부당반품(81.0) 범주 순서임(〈표 3-3〉 참고).
 - 하도급대금 조정(66.1점)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으며, 하위 4개 범주 중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포함되어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체감도 상황이 좋지 않음.
 -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조정·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평균점수 72.5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불공정거래 상황은 평균적인 상황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및 Bottom 5 분석을 통해 부당특약에 대한 불공정 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다양한 계약문서에 불공정한 계약조건 즉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반품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81.0점으로 8개 범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당반품 범주는 2020년 조사에서도 범주별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건설산업에서는 건설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체감도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구간분석 결과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상당수가 70점 이하에 분포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표 3-13〉 참고).
- 조사대상 8개 범주별로 체감도 점수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함.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특약 범주에서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항목의 분포 비중이 80%임.
 - 하도급대금 결정: 70점 이하 항목 비중이 37.5%(8개 항목 중 3개)
 - 하도급대금 조정: 70점 이하 항목 비중이 100%(3개 항목 중 3개)
 - 하도급대금 지급: 70점 이하 항목 비중이 50%(4개 항목 중 2개)

-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지급 등 4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64%가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에 해당함.

- 4개 범주에 속하는 25개 항목 중 16개(64.0%)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70점 이하임.

-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보복조치 금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모두 70점을 상회하고 있음.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 4개 모두 80점 이상으로 나타났음.

○ Top 5 및 Bottom 5 분석 결과,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불공정 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Bottom 5는 39개 전체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배열하여 하위 5개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불공정거래가 가장 심각한 항목이라는 의미를 가짐. 부당특약 범주 3개 항목,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 1개 항목, 하도급대금 조정 1개 항목이 포함되었음. 이들 하위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60점대에 불과함.

- Bottom 5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1-⑥, 63.9점)
- ②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6-③, 64.1점)
- ③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1-⑩, 64.6점)
- ④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1-⑨, 65.8점)
- ⑤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7-③, 65.9점)

- Top 5는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여 상위 5개를 선정한 것임. Top 5에 포함된 항목은 체감도 점수가 80점 이상으로(최고 81.6, 최저 80.0) 조사되어 이들 항목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Top 5 항목은 아래와 같음.

- ①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5-④, 81.6점)
- ②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5-③, 81.4점)

- ③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5-①, 81.0점)
- ④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5-②, 80.1점)
- ⑤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4-③, 80.0점)

○ 2021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장 문제되는 불공정행위는 부당특약임. 부당특약 범주는 범주별 점수로는 최하위는 아니지만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고 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도 부당특약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부당특약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됨.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에서 특히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63.9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64.6점), 간접비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65.8점) 항목은 최하위 5개 항목에 포함되고 있어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각한 상황임.
-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면서 은폐하기 용이한 계약문서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두는 행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다양한 계약문서 속에 숨어있는 부당특약은 계약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당국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음. 또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조건이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도급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이므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문서에 부당특약을 두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렇지만, 부당특약은 계약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하도급계약은 원·하도급업체 당사자 간의 사적계약으로 공공의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정책당국은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조건을 심사하기 어렵더라도, 특별히 공공 발주기관은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비용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이 있는지’,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지’에 대하여 심사 또는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입찰내용에 없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등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비용 관련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당특약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지급과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태, 현장근로자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처벌이 필요함.
- 하도급대금 결정, 조정 및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0점~70점 초반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문제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특히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간 체결된 원도급계약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조정되는 경우에 변경내용이 하도급계약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도급대금 관련 체감도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지급에 비해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체감도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계약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이 됨.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하도급대금 결정, 원도급계약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은 하도급계약의 핵심적인 요소가 됨. 적정하고 적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조정 및 지급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됨. 또한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결정, 조정 및 지급은 현장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현장근로자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도급대금의 전자적 지급, 정부계약의 간접비 조정 시에 하도급업체 분을 반영하게 하는 등 정부에서 하도급대금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공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움.
-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지급과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도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한 정책은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하도급대금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건물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공사의 안전은 물론 공사품질,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태,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근로자의 소득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로서 정부도 최근 불법 하도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처벌이 필요함.
- 현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하도급업체가 심각하게 인식하는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감시하고 처벌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도 업계에서 제기하는 심각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항목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종광, 선임연구위원(jglee@ricon.re.kr)

참고문헌

전문건설협회(2021), 2020년 기준 전문건설업 통계분석 자료.

건설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도 조사 설문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원·하도급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하여 **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20년 1년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감도 조사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집계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나 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귀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체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 ▲ 조사거래: **2020년** 1년 동안 이루어진 건설하도급거래
- ▲ 조사내용: 하도급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
- ▲ 조시시점: 2021년 5월 24일 - 6월 11일
- ▲ 조사방법: 무기명 작성 → 팩스 제출

※ 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체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계약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간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익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부당한 감액(하도급법 제11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부당한 반품(하도급법 제10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거래상대방(발주자)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 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 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 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따로 약정한 기일이 없으면 최대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현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제외)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는 행위					

7.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p>수급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a·b·c·d)를 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a.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p> <p>b.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p> <p>c.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p> <p>d.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p>					

202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2021년 11월 인쇄

2021년 11월 발행

발행인 유병권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117-0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